



국내 농업이 과거의 소규모 가족경영에서 기업형으로 경영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. 이에따라 외부인력의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농촌인력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. 결국 국내 농가에서도 외국인 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기로 한다. <편집자주>

1. 제도도입

가. 도입배경

그동안 농업투자 확대로 우리 농업이 과거의 소규모 가족경영에서 기업형으로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인력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촌인력 감소로 농업경영체의 인력난이 가중되어 농업경영체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 고용하는 실정.

-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활용실적(1994~2002) : 12,164명
- 불법체류자 2,500명이 농업에

종사(2002,3 법무부에 신고한 인원)

나. 추진경위

농림부가 국무조정실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농업연수 제도 도입 협의를 추진(2002.5.15~7.18)

- 2002년 11월 국무조정실 소속 「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」에서 농업 연수제도 도입 및 국가별 인원을 확정(6개국가 5,000명)
-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 운영에 관한지침 제정(2003.1.27 농림부고

시)

- 농협중앙회를 모집 및 추천기관으로 지정
- 농협중앙회에 외국인농업연수 협력단을 설치
-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운용요령 제정(2003.2.28)
- 송출국가에 송출기관 추천의뢰 등 도입절차 추진
 -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개정(2003.7.30)
 - 농업경영체 이외의 일반법인에 제도 농업연수생을 배정
 - 대상품목을 확대(4품목→ 14개 품목)

2. 제도개요

가. 송출국가선정

· 농림부가 농업경영체의 희망을 반영,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설치된 「외국인력정책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송출국가 및 국가별 정원을 배정

나. 송출기관

- 송출기관 선정절차
- 농협중앙회장이 송출국가가 새로 지정되거나 도입인원 확대로 송출기관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배정방안에 의하여 송출기관을 선정
- 송출기관은 송출국가로부터 해외인력송출허가를 받아 해외송출 실적이 있고, 적정교육시설 및 교육 인원이 확보된 기관
- 송출기관은 국내지사를 설립하

여야 함. 다만, 배정인원이 적은 경우 협력업체를 지정·운영 가능

- 국내지사는 요건

- 지사장 및 상시종업원을 연수생 500명까지 4인(통역 1인포함), 추가 가 500인마다 2인(통역 1인 포함) 추가확보

- 사무실 330m²이상, 업무용차량 및 전산장비 등

- 송출기관 인원배정

-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송출기관별 정원을 배정

-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

- 농협중앙회장이 매년 1회이상 송출기관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출기관 정원배정 및 재계약 시 반영

- 송출기관의 임무

- 연수생 관리계획수립, 입출국 지원 및 인계인수, 불법부당행위의 처리 외국인등록지도, 이탈방지 및 출국조치, 건강검진, 근무처·체류 자격변경, 기타 애로해결

다. 농업연수생 자격

- 30세이상 45세이하의 신체건강한 자

-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입국제한대상이 아닌 자

- 송출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

- 농업연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



라. 농업연수업체

- 대상업종 및 배정 최소영농규모

- 작물재배업(면적) : 시설원예 4,000m², 시설버섯 1,000m², 과수 20,000m², 미나리 16,000m², 콩나물 200m²

- 축산업(축사면적) : 젖소 1,400m², 한우 3,000m², 돼지 1,000m², 말·래드디어·엘크 250m², 산양·꽃사슴·토끼 700m², 육계 5,000m², 산란계 2,000m², 오리·칠면조·매추리 1,000m²

- 자격요건 :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농업경영체중 숙박시설 보유자

마. 농업연수생도입 및

농가배정 절차

- 농업경영체가 농협중앙회(또는 시군지부)에 시·군 농업기술센터



장이 발행하는 영농규모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업연수생 배정신청서 제출

- 농협중앙회는 송출기관별로 도입인원을 배정하고, 송출기관은 배정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농업연수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농협 중앙회에 제출

- 농협중앙회는 그 명단중에서 농업연수생을 컴퓨터로 최종 선발

- 송출기관은 최종선발된 농업연수생을 11일이상의 소양교육과 건



강검진 실시후 국내에 입국조치

- 농협중앙회는 입국한 농업연수생에 대하여 3일간의 소양교육과 건강검진 실시후 농가에 배정

바. 농업연수 조건 및 권리보호

- 농업연수생 체류기간은 3년(1연연수+2년연수취업)

- 연수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이상의 수당, 건강보험, 산재보험과 숙식제공

- 연수취업기간중에는 연수기간 중의 보장에 퇴직금 추가지급

- 농협중앙회에 농업연수생상담센터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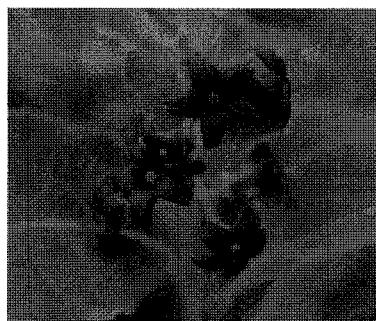
사. 외국인농업연수생에 대한

가축방역대책

- 입국전 11일 이상 및 입국직후 3일간의 격리교육 실시

- 입국시 공항만에서 의복·신발·소독과 육류반입 차단

- 농협, 수의과학검역원, 시도 등 관계기관단체의 협조체계 강화



관리 체계개선

3. 농업연수생 도입실적 및 2004년도 계획

가. 2003년 도입실적 : 2개 국가 957명

· 우즈베키스탄 751명, 몽골 206명

나. 2004년 도입계획 : 7개 국가 2,000명

· 몽골 200명, 태국 200명, 캄보디아 200명, 베트남 200명, 키르기즈스탄 200명, 중국 900명, 우즈베키스탄 100명

다. 2004년 도입실적(11.4일 현재) : 224명(지금까지 도입인원 누계 1,181명)

· 몽골 119명, 태국 37명, 캄보디아 37명, 베트남 31명

※ 대상업종 확대 등 농업경영체의 편의를 위해 농업연수제도 개선 추진예정(농업연수지침 개정) ●